

인천광역시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안 번호	953
----------	-----

발의연월일 : 2009. 11. 26.

발 의 자 : 성용기·문희출 의원
(찬성자 6인)

□ 제안이유

- 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라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일괄·대안 설계심의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설계심의분과 위원회를 설치하고, 설계 경제성 검토(VE)의 전문가 참여를 위한 설계 경제성검토편과위원회를 설치하여 설계업무의 내실을 기하고자 하며,
- 나. 군·구 또는 공사·공단 및 특수 법인 요청 사안, 발주청에서 시행하는 시설물 정밀안전진단의 적정성에 대한 심의를 추가하는 등 지방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기능 강화·확대 및 심의수당 현실화를 통해 심의위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건설공사에 대한 기술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함(안 제7조).
- 1) 「지방계약법」 제95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입찰안내서 작성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 심의
 - 2)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심의
 - 3) 「인천광역시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22조에 따른 총사업비 변경에 관한 사항 심의

- 4) 군·구 또는 공사·공단 및 주요 특수목적 법인(SPC)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한 건설기술 심의
- 5) 건설기술 관련 검토·확인·평가
 - 가) 설계의 경제성 검토에 관한 사항
 - 나)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확인
 - 다) 용역 및 시공평가 등

나.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일괄·대안 설계심의를 위해 설계심의 분과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함(안 제10조).

- 분과위원장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분과위원으로 구성하며, 관계 공무원을 과반수 포함하여야 함.

다.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설계 경제성 검토의 전문성을 기하기 위해 설계경제성검토분과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함(안 제11조).

- 분과위원장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분과위원으로 구성함.

라. 분야별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안 제13조 및 제14조).

- 1) 건설기술심의·설계심의·건설기술자문소위원회를 구성함.
- 2) 소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30명 이내로 구성함.

마. 품질관리, 용역 및 시공 평가 등에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 및 관계공무원을 참여하도록 함(안 제15조).

바. 심의수당을 「엔지니어링사업 대가기준」 특급기술자 임금으로 조정하여 현실화하고, 수탁 심의수수료를 징수하도록 함(안 제19조 및 제20조).

□ 참고사항

- 가.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 나. 참고자료

인천광역시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인천광역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설공사 및 건설기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검토 등을 하기 위하여 건설기술관리법(이하 "건기법"이라 한다)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소관업무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소관업무담당과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인천광역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건설업무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4급 이상 기술직렬 공무원 또는 기술사·건축사 자격이나 박사학위를 소지한 5급 기술직렬 공무원
2. 건설관계 단체 및 연구기관의 임원
3. 건설공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사정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시장은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정수 5분의 1 범위에서 추가하여 사안별로 중앙위원회,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위원회 및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가 중에서 일시적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⑥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설계심의분과위원회와 설계경제성 검토분과위원회의 분과위원은 겸임할 수 없다.

제3조(위원의 임기) 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까지로 한다.

제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제2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심의 대상 안건에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자문·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2. 해당 심의 대상인 건설공사의 시행으로 이해 당사자(대리관계를 포함한다)가 되는 경우
3. 최근 3년 이내 해당 심의 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할 경우

4. 그 밖에 심의 안건과 직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심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이나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직접 설계, 감리 또는 시공에 참여한 건설공사가 부실하거나 공중에 현저한 피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3.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해당하게 된 경우
4.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경우
5.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6. 설계 또는 기술제안서 심의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정한 청탁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는 등의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7. 특정 심의대상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유리 또는 불리하게 평가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잃은 경우
8.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침해한 경우
9. 담당 심의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한 경우
10. 위촉 당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11. 경력, 학력, 부패행위전력 등을 허위로 제출한 경우
12. 기타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6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기술심사업무담당사무관으로 하고, 서기는 관련업무 담당자로 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시행령 제19조제2항 각호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2. 시행령 제21조제5항제5호에 따른 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시설물 제외)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 제1항제7호에 따른 입찰안내서 작성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

4. 「인천광역시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22조에 따른 총사업비 변경에 관한 사항
 5.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사·공단 및 시 또는 공사·공단에서 출자한 주요 특수목적 법인이 요청하는 사항
 6. 건기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건설기술과 관련하여 자문하는 사항
 7.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검토·확인·평가 등을 할 수 있다.
1. 시행령 제38조의13에 따른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2. 건기법 제24조에 의한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확인
 3. 건기법 제36조에 의한 용역 및 시공 평가 등

제8조(심의요청) ① 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 중 심의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1. 기본계획 고시 및 타당성조사 용역 보고서
2. 특정공사 및 대형공사 집행기본계획서
3. 공사설명서, 공사시방서, 설계보고서, 설계도면, 각종 보고서 및 계산서
4. 입찰안내서, 공사예산 산출근거
5. 분리발주 가능여부 검토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공동도급 기준 및 지역생산 자재 우선활용계획)
6. 기타 심의부서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청하는 서류

② 건설공사 설계의 변경을 심의 요청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기술변경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1. 변경 설계서
2. 설계변경 내역서
3. 기타 설계변경 심의에 필요한 자료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의안명,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회의소집 통보서를 회의개최 7일전까지 위원 및 심의를 요청한 기관 또는 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설계심의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시행령 제19조제2항제1호의3에서 정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이하 "심의분과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심의분과위원회는 위원회 위원 중 분과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분과위원으로 구성하며, 분과위원 정수를 50명을 초과하여 구성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하여 70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분과위원은 시 소속 공무원 및 군·구 공무원을 과반수 포함하여야 한다.
③ 심의분과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심의·운영에 관하여는 시행령 제10조의2제4항을 준용한다.

제11조(설계경제성검토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제7조제2항제1호에서 정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계경제성검토분과위원회(이하 "검토분과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검토분과위원회는 위원회 위원 중 분과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구성위원 중 3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을 지정하여 설계의 경제성 등을 검토하고 위원장에게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검토분과위원회의 검토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시와 군·구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공사·공단에서 발주한 10억 이상의 건설공사
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

3. 총공사비 규모와 관계없이 당해 건설공사를 허가·인가·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공사
4.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공사
 - ④ 검토분과위원회의 사업규모별 계획수립·시행 등 구체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⑤ 검토분과위원회의 검토를 받은 건설공사는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에 따른 계약심사와 「일상감사 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일상감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2조(분과위원장 임명 등) ① 심의분과위원회 및 검토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의 분과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②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둘 수 있으며, 간사 및 서기는 관련업무담당사무관 및 담당자로 한다.

제13조(소위원회) ① 제7조제1항에 따른 심의와 관련하여 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건설기술심의소위원회
 2. 설계심의소위원회(제10조에 따른 심의분과위원회 관련 소위원회)
 3. 건설기술자문소위원회
- ② 소위원회는 위원 5명 이상 30명 이내로 구성한다.
-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거나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으로 한다.
- ④ 소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이 위원회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 ⑤ 위원장은 심의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위원회의 위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

제14조(소위원회 심의) ① 제13조에 따른 소위원회 심의대상은 다음과 같다.

1. 건설기술심의소위원회

가. 제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항(단, 제10조제1항에 따른 심의
분과위원회 심의대상은 제외한다)

나. 제7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7호에 해당하는 사항

2. 설계심의소위원회

가.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항

나. 제7조제1항제5호중 심의분과위원회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사항

3. 건설기술자문소위원회

가. 제7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항(단, 제10조제1항에 따른 심의
분과위원회 심의대상은 제외한다)

나. 제7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사항

② 소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소위원회 회의에 관하여는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확인·평가 등) ① 위원장은 제7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확인, 용역 및 시공 평가 등을 실시할 경우
위원회의 위원 및 관계공무원을 참여하게 할 수 있으며, 그 경우
결과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 설계경제성 검토 등 기술검토를 관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16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 때 마다 회의록을 작성하거나
회의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위원이 제출한 심의의견서, 기술검토서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17조(비밀유지)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18조(심의결과 통보 및 사후관리) ① 시장은 심의결과를 심의요청 기관 또는 부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를 받은 심의요청 기관 또는 부서장은 조치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건설기술심의를 받은 건설공사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 및 관계공무원에게 평가를 실시하도록 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발주 기관에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9조(심의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참석수당·일비 및 여비·사전검토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심의수당 등은 별표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2. 일괄·대안 설계심의 및 설계 경제성 등의 사전검토 등 위원회 참석 전에 진행하는 검토에 대한 비용은 따로 산정할 수 있다.

제20조(심의수수료 등) ① 시장은 제7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라 위원회에 건설공사 설계 등의 심의를 요청할 경우 심의수수료 등을 부담하도록 할 수 있으며, 심의수수료 등의 부담에 관하여는 별표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시 소속기관 및 자치구·군에서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
2. 시비 지원 또는 시비보조금 사업에 대하여 심의 요청하는 때

② 수수료는 위원회 심의 전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기타 수수료의 징수 방법 및 절차는 지방세 징수 기준에 따른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건설기술심의 수당 지급기준 및 건설기술심의 수수료 산정기준
(제19조 및 제20조 관련)

1. 건설기술심의 수당 지급기준

가. 참석수당 : 참석수당은 엔지니어링사업 대가기준 특급기술자 임금으로 지급

- 1) 1일 4시간 초과 : 전액 지급
- 2) 1일 4시간 이하 : 50% 지급

나. 일비 및 여비 : 공무원여비규정 준용

다. 사전검토비 : 사전검토가 필요한 경우 난이도 별 구분 지급(건당)

- 1) 보 통 : 30,000원(입찰방법, 입찰안내서 등)
- 2) 복 잡 : 40,000원(기본설계, 실시설계, 정밀안전진단 등)

※ 사전검토비는 건당 지급하되 1회 최고 4건 이상 지급할 수 없다.

라. 산출기준 : 참석수당+일비+여비+사전검토비

2. 일괄·대안입찰 심의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수당 지급기준

가. 설계도서 검토비와 참석수당, 일비 및 여비로 구분하여 지급한다.

나. 산출기준

- 1) 설계도서 검토비 : 참석수당(4시간 이하)×설계도서 검토 일수
- 2) 참석수당, 일비 및 여비 : 제1항 산출기준에 따라 산출

(사전검토비 제외)

3. 건설기술심의 수수료 등

가. 건설기술심의 수수료는 제1호 및 제2호에서 산출한 심의수당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심의위원 식대 등 일괄·대안입찰 심의에 소요되는 부대비용은 심의를 요청하는 사람이 부담한다.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건설기술관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조(정의) ○ 제5조(건설기술심의위원회) ○ 제5조의2(설계자문위원회) <input type="checkbox"/>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조(기타 건설기술의 범위) ○ 제19조(지방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 제21조(설계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 제38조의13(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input type="checkbox"/>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개정안(“별도 첨부”) <input type="checkbox"/>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정밀 안전진단의 실시) <input type="checkbox"/>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 <input type="checkbox"/>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정의) <p style="text-align: center;">“내용 별지 작성”</p>
관련조례 정비대상	
관련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인천광역시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22조(공사계약 변경 이전 총사업비 협의) <input type="checkbox"/> 조달청설계자문위원회 심의수당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달청설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제18조

관계법령 발췌사항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1.1.16, 2007.5.17, 2008.2.29>

2. "건설기술"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사항에 관한 기술을 말한다. 다만, 안전에 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근로자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

가. 건설공사에 관한 계획·조사(측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설계(「건축사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설계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설계감리·시공·안전점검 및 안전성검토

나. 시설물의 검사·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유지·보수·철거·관리 및 운용

다. 건설공사에 필요한 물자의 구매 및 조달

라. 건설공사에 관한 시험·평가·자문 및 지도

마. 건설공사의 감리

바. 건설장비의 시운전

사. 건설사업관리

아. 기타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5조 (건설기술심의위원회) ①건설기술의 진흥·개발·활용등 건설기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에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를,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군사시설공사중 군사기밀에 관련된 건설공사에 관한 설계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1997.1.13, 1999.4.15, 2007.5.17, 2008.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환경부장관등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고, 지방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특별위원회를 두는 경우, 그 구성·기능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5조의2 (설계자문위원회) ①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에 관한 발주청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발주청에 설계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자문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발주청이 정한다.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조 (기타 건설기술의 범위) 「건설기술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아목에서 "기타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5.6.30>

1. 건설기술에 관한 타당성의 검토

2.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건설기술에 관한 정보의 처리

3. 건설공사의 견적

제19조 (지방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개정 2007.12.31>) ①지방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50명(특별시의 경우에는 3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6.12.29, 2007.12.31>

②지방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1997.7.21, 1999.10.30, 2001.7.30, 2005.6.30, 2005.12.30, 2006.12.29, 2007.12.31, 2008.2.29, 2008.12.9>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설계의 타당성과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다만,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건설공사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건설공사를 제외한다.

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기업체가 시행하는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나.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로서 당해 건설공사에 관한 허가·인가·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국가기관을 제외한다)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특별히 요청하는 공사

다.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기본적인 계획 또는 공법이 변경되는 공사

- 1의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제5항에 따른 새로운 기술·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제기된 이의에 관한 사항
- 1의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제2항 본문에 따른 대안의 설계 범위와 한계,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제4항에 따른 설계의 적격 여부 심의 및 설계점수 평가,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제8항에 따른 대안입찰가격의 조정 또는 설계의 수정, 같은 법 시행령 제132조제2항에 따른 기술제안입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4조제3항에 따른 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에 관한 사항
- 1의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6조제1항에 따른 대형공사·특정공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8조에 따른 기술제안입찰 또는 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의 입찰 방법에 관한 사항
- 1의5. 발주청이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를 위탁하기 위하여 그 적정성에 관한 심의를 요청한 사항
- 1의6. 다른 법령에서 지방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
- 2. 그 밖에 시·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
- ③지방위원회의 위원은 중앙위원회,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위원회, 특별위원회, 설계자문위원회 또는 관계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자 및 해당 분야의 전문가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정수의 5분의 1의 범위에서 사안별로 위원을 일시적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신설 1999.10.30, 2001.7.30, 2007.12.31>
- ④지방위원회의 구성·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1조 (설계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개정 2001.7.30>)

- ⑤설계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1.7.30, 2005.6.30, 2005.12.30, 2006.5.25, 2006.12.29, 2008.12.9>
- 5.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제38조의13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①발주청은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함께 있어서는 설계 대상시설물의 주요기능별로 설계내용에 대한 대안별 경제성 및 현장 적용의 타당성(이하 "설계의 경제성등"이라 한다)을 직접 검토하거나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감리자 등의 전문가로 하여금 이를 검토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총공사비가 100억원 미만의 건설공사에 대하여도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는 설계의 경제성등을 검토할 수 있다. <개정 2005.6.30>

- ②설계의 경제성등의 검토시기·횟수·대가기준, 구체적인 검토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 ③발주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의 결과로 제시된 설계의 개선제안내용을 적용하기가 기술적으로 곤란하거나 비용을 과다하게 증가시키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설계내용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 ④발주청은 제1항에 따라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6.12.29, 2008.2.29>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제7조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①관리주체는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시설물의 재해 및 재난예방과 안전성 확보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은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1999.1.29, 2008.3.21>
- ②정밀안전진단의 실시시기,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자의 자격과 정밀안전진단대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3.21>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9조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① 법 제7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완공 후 10년이 지난 1종시설물(공동주택 및 폐기물매립시설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 ② 법 제7조제1항 단서 및 이 조 제1항에 따른 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은 완공 후 10년이 지난 때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하여야 하며, 그 후에는 이전 정밀안전진단을 완료한 날을 기준으로 별표 1의2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기설비, 기계설비 또는 계측시설을 포함하는 복합된 시설물(건축물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별표 2의3에 따른 해당분야의 기술자격자에게 해당 시설물의 구조안전에 관련되는 전기설비, 기계설비 또는 계측시설에 대하여 정밀안전진단을 하게 하여야 한다.

③ 관리주체는 안전진단전문기관에 정밀안전진단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을 설계·시공 또는 감리한 자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이나 해당 관리주체에 소속되어 있거나 해당 관리주체의 자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에 의뢰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공공관리주체가 소관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때 전문기술이 필요하여 다른 안전진단전문기관이나 공단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전문개정 2008.9.18]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 (정의) ①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7.9.20>

4. "대안입찰"이라 함은 원안입찰과 함께 따로 입찰자의 의사에 따라 제3호의 대안이 허용된 공사의 입찰을 말한다.
5. "일괄입찰"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가 제시하는 공사일괄입찰기본계획 및 지침에 따라 입찰시에 그 공사의 설계서 그 밖에 시공에 필요한 도면 및 서류(이하 "도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설계·시공일괄입찰을 말한다.
6. "기본설계입찰"이라 함은 일괄입찰의 기본계획 및 지침에 따라 실시설계에 앞서 기본설계와 그에 따른 도서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입찰을 말한다.
7. "입찰안내서"라 함은 제4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당해 공사의 입찰에 참가하기 전에 숙지하여야 하는 공사의 범위·규모, 설계·시공기준, 품질 및 공정관리 그 밖에 입찰 또는 계약이행에 관한 기본계획 및 지침 등을 포함한 문서를 말한다.

관 련 자 료

【인천광역시총사업비관리지침】

제6절 시공 단계

제22조(공사계약 변경 이전 총사업비 협의) ①사업부서의 장은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 규모, 총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계약 변경 이전에 예산담당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주) 실시설계의 총사업비 보다 100분의 8 이상 증가한 경우 총사업비 변경요구 전 인천광역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사업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사업비 변경 협의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의 필요성, 설계서(공종별 세부 공사단가 포함), 종합공정표, 기타 공사비 산출내역을 명확히 알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심의수당 산출근거】

4-1. 조달청설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제 4 장 설계자문위원의 운영 등

제18조(설계자문위원회 운영) ①수요기관장의 요청에 의하여 조달청설계자문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수당, 여비, 숙박비 등)을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되 수요기관에서 직접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설계자문위원 수당은 특급기술자의 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되 별도 여비를 포함하여 지급할 수 있다.

4-2. 기술위원회 심의수당 산출기준(참석수당+일비+여비+사전검토비)

<적용 예>

- 일반기술심의 : $234,433\text{원} \times 1/2 + 20,000\text{원} + 5,000\text{원} + 70,000\text{원} = 212,216\text{원}$

※ 4시간 이내, 안전 2건

- 경제성 검토, 품질점검, 시공평가 등 : $234,433\text{원} + 25,000\text{원} = 259,433\text{원}$

※ 4시간 초과